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74호 2010. 8. 2.(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91호 도로지정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92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91호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토지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건축허가현황

건축주	조창묵	보아스그린종합건설(주)
대지위치	백석동 218-28	원창동 63-2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건축구분	신축	신축(허가사항변경)
허가일자	2010. 7. 28. [2010-건축과-신축신고-5]	2006. 7. 11.(2010. 7. 28.) [2006-건축과-신축허가-124]

도로지정현황

위치	도로편입면적(m ²)	토지소유자	계(m ²)	비고
백석동 218-28	41	박희서	41	
원창동 63-4	87	보아스그린종합건설(주)	186	
원창동 71-9	99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0. 7.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92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노인복지법」 제36조가 일부개정('07.8.3)됨에 따라 '08.8.4부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사용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제명변경

- ▷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
-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분관형태이나, 별도의 독립형태로 운영되는 운영되는 노인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 노인복지회관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정

○ 목적규정 변경

-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중 노인복지관의 운영목적은 운영관리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명칭 변경 사용

-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안 별표 1)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의 변경

- ▷ 기존 2년 ⇒ 3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2)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 제9조, 별표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관계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 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 관련)

명 칭	주 소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석남1동 484)
인천광역시서구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87 (가좌2동 2-3)

[별표 2]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시간당)	비 고
대강당	1시간	70,000	2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소강당	1시간	30,000	10,000	
강의실	1시간	30,000	10,00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2. 개정취지

- 폐금속자원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폐금속 자원을 보유한 폐소형전자제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배출수수료를 면제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지정 : 별표 10 (31개 품목)
-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배출요령 : 구청장 지정 수거함에 배출
-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배출수수료 면제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3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 032)560-4422】 에 문의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품목을 말한다.”를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에 의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연번	품명	규격	연번	품명	규격
1	가습기	모든 규격	17	전화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1m미만	18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라디오	모든 규격	19	보온밥통(술)	모든 규격
4	다리미	모든 규격	20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풍기	모든 규격	21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탈수기	모든 규격	22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7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3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모든 규격
8	청소기	모든 규격	24	컴퓨터오락기	모든 규격
9	정수기	높이 1m미만	25	노트북컴퓨터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6	모뎀	모든 규격
11	가스오븐렌지	높이 1m미만	27	TM 캐너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8	프린터기	모든 규격
13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29	복합기	모든 규격
14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	팩시밀리	모든 규격
15	전기히터	모든 규격	31	시계(전기및건전지 사용)	모든 규격
16	VTR/DVD	모든 규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일부개정, 시행 2010. 9. 9)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허가가능여부의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 규정
-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제3조(허가요건 등) :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규정

- 제4조(위해방지) :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4.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244), FAX:566-98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

사업의 종류	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용기충전업소가 위해 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자동차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별표3】 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5.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는 전용·준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3. 판매업소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이상, 사무실 18㎡, 주차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4. 판매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5. 용기보관실은 「건축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저장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